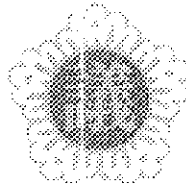


제225회 임시회
2004. 4. 2. (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제225회 임시회
2004. 4. 2. (금)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3. 30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2003. 4. 22 개방된 청남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내륙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작년 12월 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 전수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며,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어 기본설계 실시 결과, 분향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 사유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의 일원
- 재산규모
 - 건 물 : 본관의 45동 11,163.15㎡
 - 공작물 : 테니스장의 22건
 - 입목죽 : 느티나무의 40종 5,209주
 - 선 박 : 2척 10톤
- 재산가액 : 9,504백만원(대장가격)
- 사업기간 : 2004. 3~4
- 사 업 비 : 비예산(무상양수)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장례식장 : 연건평 3,729.54㎡(지하 2층, 지상 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5(3년간)
- 사업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2,250 도비 2,850, 의료원 2,30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 ⇒ 3,729.54㎡(589.54㎡ 증가)
- 사업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25억 증액)
 - 특별교부세 : ⇒ 2,250백만원(신규)
 - 도비 : 2,650백만원 ⇒ 2,850백만원(2억 증액)
 - 청주의료원 : 2,250백만원 ⇒ 2,300백만원(5천만원 증액)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만)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청남대의 개방으로 청남대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계획이 토지매입비의 상승, 신축면적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 계획은

2003. 4. 22 일반에게 개방된 청남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 받아 부지를 구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 45동과 테니스장 등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입목죽 40종 5,209주, 경비용 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으로서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산의 일괄양수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도 이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전되는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계획과
청남대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
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현대화
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계획
을 승인하였으나,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매입단가 상승과
건축면적 589.54㎡의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49억원 대비
51%인 25억원이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대비 50%인 2억원이나 증액된 사유와
대상토지인 국유지 2필지 395㎡의 무상양수 여부,
건물 연면적 589.54㎡의 구체적인 증가내역과
추가사업비 25억원의 재원대책,
현재까지 장례식장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설명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 심사의결

가.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 계획 : 승인

나.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 : 심사보류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재원대책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6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03. 4. 22 개방된 청남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내륙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작년 12월 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 전수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청남대 재산 무상양수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외 일원
- 재산규모
 - 건 물 : 본관외 45동 11,163.15㎡
 - 공작물 : 테니스장외 22건
 - 입목죽 : 느티나무외 40종 5,209주
 - 선 박 : 2척 10톤
- 재산가액 : 9,504백만원(대장가격)
- 사업기간 : 2004. 3~4
- 사 업 비 : 비예산(무상양수)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 고
계					
청남대(국유)재산 건물등 3층 무상양수	-				비 예 산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건물	3	9,240.00㎡ (2,795평)	10,467,800	1	11,163.15㎡ (3,376평)	6,944,226	4	20,403.15㎡ (6,171평)	17,412,026
		기타				1	3종	2,560,429	1	3종	2,560,429
	매 입	토지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2	290,370.20㎡ (87,836평)	26,676,000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3	9,240.0㎡ (2,795평)	10,467,800	1	11,163.15㎡ (3,376평)	6,944,226	4	20,403.15㎡ (6,171평)	17,412,026	
	기타				1	3종	2,560,429	1	3종	2,560,429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 기타 : 3종 - 공작물(테니스장외 22건), 임목죽(느티나무외 40종 5,209주), 선박(2척, 10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품 시			주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1 건	11,163.15㎡ (3,376평)	6,944,226				
	기타	1 건	3 종	2,560,429				
1	토지							
	건물	청위 문의 신대 산 40-1외 일원	11,163.15㎡ (3,376평)	6,944,226	2004. 4	청남대의 효율적 개방·관리	국 가	무상양수
	기타	"	3 종	2,560,429	2004. 4	"	"	"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기 타 : 3종

- 공작물 : 테니스장외 22건 718백만원
- 임목주 : 느티나무외 40종 5,209주 1,762백만원
- 선 박 : 2척 10톤 81백만원

관계법령발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 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